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나5407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1. 15 선고 2024나5407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3. 6 선고 2023가단244172 판결

## 전문

**원고, 피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란

담당변호사 이선희

**피고, 항소인B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휘

**변론 종결** 2024. 10. 18.

**판결 선고** 2024. 11. 15.

**제1심판결**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3. 6. 선고 2023가단244172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3,400,000원 및 그 중 13,8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1. 4.부터, 49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1. 18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4. 10. 31.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2024. 10. 31.자 참고서면과 2024. 11. 1.자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, 피고의 추가 주장과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).

재판장판사송승훈

판사이종채

판사허일승